

노인복지법 시행규칙

제19조(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절차등)

- ⑤ 제18조제1항제1호가목·라목에 해당하는 자의 해당 시설에의 입소는 당사자간의 계약(분양계약은 제외한다)에 의한다.

제18조(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자 등)

- ① 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1. 노인요양시설·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: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노인성질환 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
 - 가.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제15조에 따른 수급자(이하 "장기요양급여수급자"라 한다)
 - 라.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는 60세 이상의 자

시설 생활 노인 인권보호지침

○ 노인 스스로 입소를 결정하며, 공정한 입소 계약을 맺을 권리

- ① 입소 계약과정에서 노인의 의사가 자유롭게 표현되며, 존중되어야 한다.
- ② 가족 등 타인의 강요가 아닌 노인 스스로가 입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자기결정권을 보장해야하며, 그러한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자원연계 등 필요한 노력을 해야 한다.
- ③ 시설은 돌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노인을 배척하는 등 편의에 의해 자의적이고 선별적으로 입소노인을 선택해서는 안 된다. 다만, 의료적 서비스가 더 필요하거나 입소정원 초과 등 합리적 사유로 입소가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된 경우에도 노인 및 보호자에게 타 시설 소개 등 노인이 적합한 서비스를 공백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.
- ④ 입소 계약 시 당사자(시설, 노인, 보호자 등)들은 노인이 시설생활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기본적인 정보(노인의 성격, 취향 등)를 나누며, 계약서는 서명 후 당사자들이 각 한 부씩 보관한다.



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 (시설급여)

입원자(이하 "갑"이라 칭함)과 노인요양원 "행복이 가득한 집"(이하 "을"이라 칭함) 과 보호자(대리인)(이하 "병"이라 칭함)는 입원자를 본 기관에 요양시킴에 아래의 "입원이용 표준약관" 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.

계약당사자				
이용자 (갑)	성 명	(인)	등 급 (인정번호)	
	생년월일	년 월 일	연락처	자택)
	주 소			
	기 타	☐ 8% 경감대상자 ☐ 국민기초수급권자		
제공자 (을)	시설명	행복이가득한집	시설종류	노인요양시설
	시설장 성명	장 효 진 (인)	연락처	033-244-7591
	주 소	강원도 춘천시 서면 박사로 785		
대리인 또는 보호자 (병)	성 명	(인)	관 계	'갑'의
	생년월일	년 월 일	연락처	
	주 소			

계약기간	2022년 월 일 ~ 년 월 일													
월 정 비	매월 ₩ 원씩 (30일 기준) - 첫달 : ₩ 원													
	월	1	2	3	4	5	6	7	8	9	10	11	12	계
	월 종일	31	28	31	30	31	30	31	31	30	31	30	31	
	30일 기준 차일	1	-2	1	0	1	0	1	1	0	1	0	1	5
※ 매월 청구금액은 30일 기준이며 종일(終日)의 증감분은 12월에 정산하여 청구합니다.														
입금계좌														
입 금 일	매월 1일													

계약일 : 년 월 일

행복이 가득한 집은 우리 모두의 행복을 만들어 갑니다!

24461) 강원도 춘천시 서면 박사로 785(현암리 531-1) ☎ 033) 244-7591 fax: 033) 244-7516
http:// www.hh2255.co.kr



제1조 【 목 적 】

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(장기요양급여수급자)에게 시설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.

제2조 【 계약기간 】

- ①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.
- ② 1항의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.
- ③ '을'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'갑'(또는 '병')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, '갑'(또는 '병')은 이후 15일 이내에 '을'에게 회신 하여야 한다.
- ④ 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'갑'(또는 '병')으로부터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은 1년간 자동연장 된다. (단, 시설 정원이나 갑의 장기요양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는 그렇지 아니한다.)
- ⑤ 계약내용 변경사항(장기요양 인정등급, 장기요양 급여비용, 비급여비용 등) 발생 시 이를 즉시 반영한다.
- ⑥ '갑'(또는 '병')이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.

제3조 【 입소 · 이용료 납부 】

- ① '갑'의 입소당월 이용료는 년 월 일에 납부하기로 한다. 입소당월 이후 매월 이용료는 매월 01일 납부하기로 한다.(01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로 한다)
- ② '갑' (또는 '병')은 본인일부부담금과 비급여항목에 대한 비용을 전액 지불하여야 한다.
- ③ '갑'의 이용료 납부방법은 앞장에 기재된 농협 은행 계좌로 입금 한다.
- ④ '갑' 또는 '병'의 요구에 의한 개별적인 물품·용역의 구입과 개별적인 희망에 의해 외부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·서비스에 따른 실비는 '갑' 또는 '병'이 별도 부담한다.
- ⑤ '갑'의 사망 또는 "갑"과 "병"의 개인사정으로 퇴소시 선납된 월정비는 환불되지 않는다.
- ⑥ '갑'의 장기입원으로 인한 이용료 납부는 "갑 또는 을"이 퇴소를 결정하지 않을시 계속 입소로 간주하여 "을"은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

◇ 시설급여 (1일)

구 분		1등급	2등급	3/4/5등급
급여	노인요양시설(개정법)	82,240원	78,150원	73,800원
비 급 여	상급침실 이용료	1,330원/1일		
	식재료비(1식)	3,800원/1식		
	간식비(1회)	1,000원/1일		
	이/미용료등	0		

※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(위원장 : 보건복지부 차관)가 결정, 고시하는 『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』(보건복지부 고시)에 따름

안 내

수급자 자격별 본인일부부담 비율

구 분	시설급여
일반	20%
기초수급권자	0%
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(희귀난치성, 만성질환자)	12%
저소득층 (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·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)	8%

※ [근거규정] 노인장기요양보험법

제40조(본인일부부담금) ①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수급자가 부담한다.
다만, 수급자 중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권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재가급여 :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
2. 시설급여 :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

◇ 세부내역(30일기준)

구 분		금액(원)	내 역
공단급여비용		원	
요양보험 부담비용	요양급여비용(%)	원	
개인 부담비용	소 계	원	
	요양급여비용(8%)	원	
	식사재료비/간식비	원	
	상급침실 이용료	원	
	기타		

1. 비급여 항목 세부기준

1) 기본원칙

- 비급여 항목은 식사재료비,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, 이.미용비이며, 그 밖의 비용은 기관에서 임의로 수납할 수 없음
- 해당 비용은 원칙적으로 해당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실제 소요비용(실비)만을 산정해야 하며, 별도의 이윤부가 불가

2) 세부기준

(1) 식사재료비 : 경관영양 유동식, 간식도 식재료비의 일종임

(2) 상급침실 이용료

- 1인실 또는 2인실 사용하는 경우 일반실에 비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수납
- 상급침실은 (a) 반드시 고정된 벽으로 다른 공간과 구분되어 있고(파티션, 커튼 등은 불가), (b) 독립된 출입문을 갖추며, (c) 노인복지법 시설.설비기준에 의거한 1인당 면적기준(개정법 6.6㎡)을 충족하여야 함

(3) 이.미용비 : 수급자 희망에 의해 이.미용사 초빙하여 서비스 받는 경우 비급여 가능, 단 시설종사자.자원봉사자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비급여 항목으로 수납 불가, 손.발톱 정리 등의 명목으로 별도 수납은 불가

2. 비급여 항목 외 실비 수납기준

수급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시설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실비를 수납할 수 있으며, 기관은 실비 이외에 추가비용을 수납하지 못함

제4조 【 계약자 의무 】

‘갑’과 ‘을’ 그리고 ‘병’은 다음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.

① ‘갑’의 의무

1. 월 이용료 납부
2.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에 협조
3. 시설 내에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
4.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
5. 기타 시설생활 규칙 이행

② ‘을’의 의무

1. ‘갑’의 건강관리 협조
2. ‘갑’의 신변이상을 ‘병’에게 즉시 연락
3. 식사제공 및 생활상담, 조언 및 생활편익 제공
4.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
5. 기타 ‘갑’의 안락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협조

③ ‘병’의 의무

1. ‘갑’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
2. ‘갑’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
3. 인적 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
4. ‘갑’의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‘을’에게 통보
5. 기타 시설생활 규칙이행

제5조 【 계약해지 요건 】

① '갑'의 해지

1. '갑'과'병'은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퇴소를 결정할 수 있으며, 제2조 제6항에 의거하여 이에 대한 사항을 '을'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.

② '을'의 해지

1. '갑'의 건강진단 결과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」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
2. 타 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
3. '갑'의 이용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(단, '을'은 '갑'에게 서면으로 이용료 납부를 최고하고'갑'또는'병'이 최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)

제6조 【 퇴소 】

- ① '을'은 제5조 ②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 시 이에 대한 증빙서류와 함께 계약해지 의사를 '갑'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
- ② '갑'과'병'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, 본원 소정의 퇴소신청서를 작성하여 '을'에게 제출하고 '을'의 보관물품을 인수하여 퇴소하여야 한다. 단, 사유물품을 1년 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'병'(또는 '갑')에게 통보 후 '을'이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, 이에 대해 '갑' 또는 '병'은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.
- ③ '을'은 '갑'이 퇴소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'갑'이 지정한(또는 '병')계좌로 지체 없이 지급 한다.

제7조 【 물품 및 음식물 반입 】

- ① '갑'은 시설입소 시 개인물품을 '을'과 협의하여 반입할 수 있다.
- ② '갑'과 '병'은 음식물 및 물품 등을 반입 시에는 사전에 '을'의 승인을 받는다.

제8조 【 면회 및 외출·외박 】

- ① '갑'의 면회시간은 매일 10:00시부터 17:00까지로 한다.
(단 '갑' 과 '을' 또는 '병'이 동의할 경우 변경 할 수 있다).
- ② 외출·외박 관련한 지침은 질병관리청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침에 따르며 '갑'은 외출 · 외박 시 사전에 '을'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
- ③ '을'이 제공하는 음식물 이외의 음식물을 '갑'이나 '병'이 반입하고자 할 때에는 '을'과 협의 후에 반입하여야 한다.
- ④ 외출·외박 중 '갑'에게 신체적·정신적 변화 등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 '갑' 또는 '병'은 '을'에게 즉시 사실을 알려야 한다.
- ⑤ 면회, 외출, 외박 시 위생, 감염 등 기타 문제가 있을 우려가 있는 경우는 "을"이 출입을 통제 할 수 있다.

제9조 【 건강관리 】

- ① '을'은 '갑'의 건강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'갑'과 종사자들에게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.
- ② '갑'이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진료が必要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.
- ③ 의사의 진료결과 입원이 필요한 질병이나 월 1회 이상 장기간 진료가 요구되는 경우 진료비와 부가서비스 경비(교통비, 외부간병인 등)는 '갑' 또는 '병'에게 별도 징수한다.
- ④ '을'은 입소 시 갑의 건강상태 등을 확인하고 기록함은 물론, 갑에 대한 적절한 건강관리를 하여야 하며, 갑의 건강유지, 악화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
- ⑤ '을'은 갑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활력증상 확인, 투약관리, 욕창관리, 낙상방지 등 건강관리 활동을 하여야 한다.
- ⑥ '을'은 '갑'이 의사로부터 월 2회 이상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며, 이상시 지체 없이 '병'에게 통보한다.
- ⑦ '을'은 '갑'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물리치료, 재활치료를 제공해야 한다.

제10조 【 시설물 배상 】

- ① '갑'은 '을'의 시설물에 대하여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, '갑'에 의한 시설물의 파손 또는 멸실에 대하여는 '갑' 또는 '병'이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.
- ② '갑' 또는 '병'이 원상회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'을'은 시설물의 잔존가치 등을 고려하여 실비로 산출한 비용을 그 내역과 함께 문서로 제시하고 '갑' 또는 '병'은 이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.
- ③ (면책사항 등)
 1. "갑"은 치매, 뇌졸중 또는 심신이 허약하여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므로 "갑"의 입원기간 중 발생하는 건강상의 사유나 기타 제반사고 등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 및 기타 여하한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"을"또는 "종사자"에 대해 민사, 형사상의 책임 및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.
 - 1) 신경정신과적 질환(치매)으로 인한 과격한 행동 및 과실로 인해"을"이 피해가 발생한 경우.
(단, "갑"이 타인에게 피해를 가했거나 기물 등을 파손한 경우에는 "병"이 그 피해를 보상 한다.)
 - 2) 심혈관계 이상(심장마비, 부정맥, 혈전, 뇌출혈, 혼수 등)으로 인한 급사
 - 3) 근골격계 질환자로 욕창,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, 골절구축, 와상으로 인한 근위축
 - 4) 내분비계 질환으로 인한 합병증, 당뇨로 인한 저혈당 혼수 및 괴저, 갑상선기능 항진저하로 인한 기억력 상실, 신체기능 장애로 인한 혼수 및 합병증, 부신기능 장애로 인한 근골격 및 심혈관계 합병증(고혈압, 골다공증, 골절, 출혈 등)
 - 5) 기타 질병 또는 그 합병증으로 발생한 증세

제11조 【 위급 시 조치 】

- ① '을'은 '갑'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협약병원, '갑'(또는 '병')이 지정한 병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'병'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.
- ② '병'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. 다만 대처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.
- ③ '갑'이 사망하였을 경우에 '을'은 즉시 병원으로 후송하고 '병'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. 단 '병'과 사전에 협약이 있을 경우, 을'이 장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.
- ④ 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가 불가능할 때 '을'은 '갑'의 입소 입소월액 또는 시설의 운영비로 화장에 의한 장례를 집행하고 추후에 '병'과 정산할 수 있다.

제12조 【 임종 및 장례 】

입주자의 임종 및 장례절차는 가족이나 연고자가 있을 경우와 무연고자를 구별하여 정한다.

- ① 가족이나 연고자가 있을 경우
 1. 임종이 임박하였을 시 치료 및 입원은 '병'과 협의하여 결정한다.
 2. 장례는 '병' 또는 신원인수인의 정함에 따라 가족이 장례절차의 모든 것을 수행하게 한다.
- ② 무연고자
 1. 임종이 임박하였을 시 치료 및 입원은 '을'의 책임 하에 결정한다.
 2. 장례는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행정절차에 의거하여 장례가 수행될 수 있도록 한다.
 3. 1개월 이내 관할 동(읍, 면)사무소에 사망신고를 한다.

제13조 【 식사 및 간식 】

- ① '을'은 1일 3식을 '갑'에게 제공하며, '갑'의 상태에 따라 특별식을 제공할 수 있다. 특별식 (경관급식비 등) 비용이 일반 수급자의 식재료비를 초과하는 부분은 '갑' 또는 '병'이 별도 부담한다.
- ② '을'은 식단표 및 간식제공계획에 대하여 사전에 '갑'에게 제공하고 게시하여야 한다.

제14조 【 요양실의 배정 】

'갑'의 생활실 배정은 입소순서에 따르며, 입소 후 '갑'의 건강상태, 수발조건,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'갑' 또는 '병'의 의견을 반영하여 '을'이 조정할 수 있다.

제15조 【 개인정보 보호의무 】

- ① '을'은 '갑'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.
- ② '을'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'갑'의 개인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.
- ③ '갑'의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에 대한 승낙은 서면(개인정보수집 및 활용 동의서) 으로 한다.
- ④ '갑'은 '을'이 수집·관리하는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.
- ⑤ '을'은 '갑'의 사생활을 존중하고,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.
- ⑥ '을'의 홈페이지나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'갑' 또는 '병'의 사진을 게시함에 있어 보호자의 동의에 의해 게시한다.

제16조 【 기록 및 공개 】

수급자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, 수급자나 가족이 요구할 경우 표준양식에 의거한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.

제17조 【 배상책임 】

-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'을'은 '갑'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.
1. 시설 종사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'갑'을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
 2.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거나 약을 잘못 투약하여 '갑'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
 3. 시설장비 또는 시설관리가 부실하여 '갑'을 부상케 하거나,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
 4. 학대(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)로 인하여 '갑'의 건강상태가 악화되거나,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때
-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'갑'은 '을'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.
1. 시설 내에서 자연 사망하였을 때
 2. '을'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'갑'이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
 3. '갑'이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
 4. '갑'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

제18조 【 이용계약서의 해석 】

- ① '갑'과 '을' 및 '병'이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'갑'과 '을', '병'이 합의에 따라 원만히 처리하며, 만약 당사자 간의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관련법규나 관례에 따른다.
- ② 본 계약으로 발생하는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 소재지 법원에 제기한다.

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 인 후 각각 1부씩 보관기로 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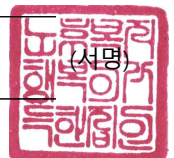
2024 년 월 일

(계약자) '갑' 이용자

'을' 시설장

(서명)

장 효 진



※ 계약서를 충분히 숙지하고 이에 동의하고 서명합니다. 보호자 :

(서명)